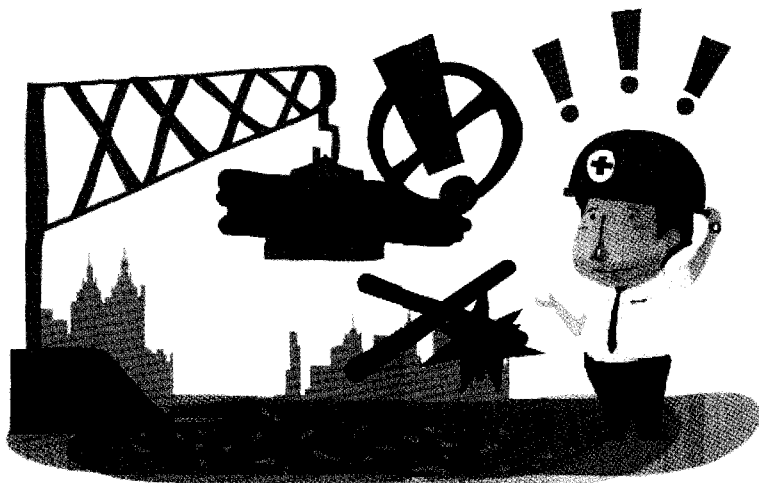


대법 “하도급업체에 책임” 안전관리 각별한 주의 요망!



건설현장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, 원도급업체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 상 안전의무를 이행한 경우 형사책임이 면책되지만 실질적으로 작업을 진행한 하도급업체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.

대법원 제2부(주심 전수안 대법관)는 업무상 과실치사(산업안전보건법 위반) 혐의로 기소된 ○○ 건설공사 원·하도급사와 그 소속 관계자에 대한 상고심에서 최근 이 같이 판결, 원도급업체와 소속 현장소장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.

이 사건에 대한 원심법원은 원도급업체와 그 현장소장, 하도급업체와 그 대표이사 등에 대해 모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.

이 같은 원심에 대해 대법 재판부는 “원도급업체와 그 소속 현장소장은 △정기적인 안전교육과

안전요원을 정상적으로 배치했을 뿐 아니라 △근로자가 건물 외부로 나가 작업하도록 지시하거나 안전고리를 연결하지 않은 채 작업한 사정을 알 수 없었고 △이 같이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작업이 계속된다는 것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방치하여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로 볼 수 없다”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받아들일 수 없다”고 밝혔다.

하지만 재판부는 공사를 실질적으로 진행한 하도급업체의 책임은 그대로 인정,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와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받아들였다.

이 같은 대법 판결은 형사재판이어서 산재보상이나 민사소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자칫 민사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하도급업체의 책임이 커질 수도 있어 보다 각별한 현장 안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.